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변석준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회계사
Tel. 02-6676-2490
sbyun@deloitte.com

이번 호에서는 비상장법인 발행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도 원칙상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성이 인정되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61조 부터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증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는 상속 및 증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상자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평가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사전에 해소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상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다.

상증법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단, 부동산 과다보유법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는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 과거 수익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제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평가일 현재 평가 대상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이 보유한 잔여재산 분배액을 의미한다.

원칙 –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손익가치 × 60% + 1주당 순자산가치 × 40%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손익가치 × 40% + 1주당 순자산가치 × 60%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는 과거의 수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④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과 해당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2]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정 자본환원율(현재 1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는 각사업 연도소득에서 익금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 등[3]을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는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text{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frac{A\times 3+B\times 2+C\times 1}{6}$$

A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순손익가치는 당해 법인의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자본환원율로 환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본환원율은 10%이다.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4]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고, 상증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는다. 자산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에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에 의한 평가액[5]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x (다른 법인의 토지 및 부동산 등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3) 각사업연도소득에가감하는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익금불산입항목(=가산항목):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이월금액 중 당해 연도 공제금액
- 손금불산입항목(=차감항목):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지방소득세, 벌금 · 과료,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손금불산입 금액

4) 일시우발적인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 분할 · 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③ 상증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⑥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가산하고, 상증법에서 자산으로 인정[6]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7]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부채총계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에 부채로 인정[8]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9]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영업권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이 5년 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환원율 10%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액 = 초과이익금액 × 3.7908(5년, 10%의 연금현가계수)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적수 × 10%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할증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10]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30(중소기업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11]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장주식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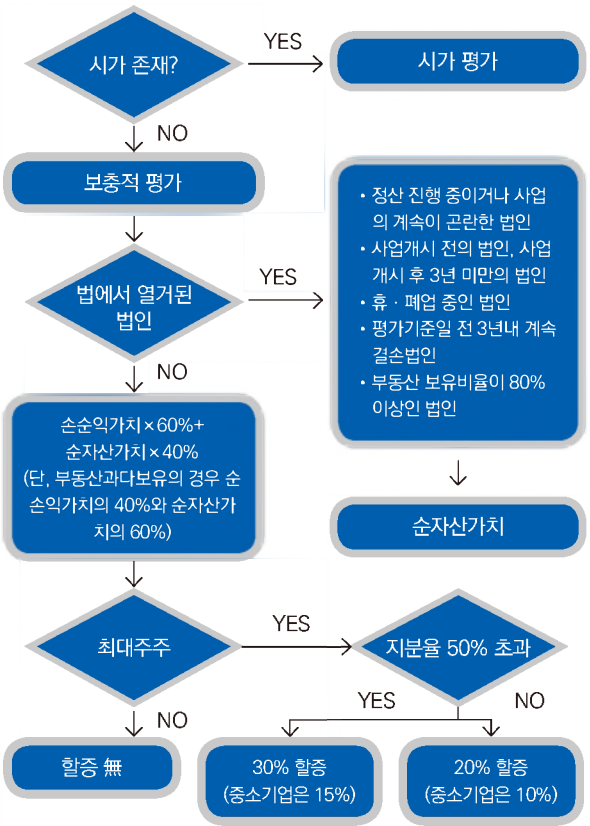

5) 상증법 60조부터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평가의 대원칙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의제시가 포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외에도 건물, 지상권,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 등의 평가방법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상 그 설명은 생략한다.

6) 법인세법상 유보금액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7) 선급비용, 개발비, 이연법인세차 등

8) 법인세 등, 배당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퇴직급여추계액.

9) 준비금, 충당금, 외화환산대, 이연법인세대

10)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11)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②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에 따른 증여의제 되는 이익 등을 계산하는 경우
③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이하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④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